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박찬식*

1. 머리말

1918년 10월 제주도 중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항일운동은 지금까지 '보천교의 난'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을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부르는 게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하였다. 단지 운동의 주체를 불교 승려로 보는가(임혜봉, 1995; 김봉옥, 1995), 그렇지 않은가(안후상, 1996)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동의 범위를 법정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중문 및 제주지역 전체로 넓혀서 보자는 견해도 있었다(박찬식, 1996; 조성운, 2001).

결국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운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주모자의 판결문이 발굴됨으로써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인 정구용(鄭九鎔, 또는 龜龍)에 대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1923년 6월 29일; 이하 「정구용 판결문」으로 약칭)으로서, 운동참여자 판결문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운동 관련 행정자료로는 『1918년도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와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가 있는데, 여기에는 피검자 66명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정구용이 이보다 4년이 지난 뒤에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도피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체포되어 사법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제주4·3사건위원회

이 판결문에는 정구용 본인의 공술뿐만 아니라, 1919년 2월에 있었던 원래 공판 자료 중 박주석·양남구·김인수·양봉·장임호·고용석·김봉화 등 운동참여자의 공술 및 신문조서를 인용 수록함으로써, 운동의 전개과정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발표자는 「정구용 판결문」을 주로 활용하여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기왕에 발표한 원고(박찬식, 1996)에서 다뤘던 운동의 성격을 다시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운동의 배경 및 전개과정

1) 1910년대 제주지역 경제상황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경제적 상태는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전국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지주 또는 걸인이 거의 없이 자작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13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자작농이 토지를 강탈당하고 말았다. 일제는 1913년 8월 5일 제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1913년 8월부터 1914년 5월까지 제출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기한 내에 그 주소·성명·소유자·지목·등급 등을 신고하여야 했다.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전라남도 당국은 1916년 1월 4일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그 구역을 공시하고, 도청에서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양식 및 근대적 법률관념에 어두워 소장 전래의 농지를 그대로 몰수당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1913년 경지면적 4만 9,520정에 비해 1926년에는 전답 9만 959정으로 83.68%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작면적의 증가는 세금부과 대상지의 확대와 새로운 토지의 개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결과 방대한 국유지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목장토와 둔전을 일제가 무상으로 국유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국유지로 편입된 목장토의 일부는 19세기 이래로 개간되어 온 땅으로 농민들은 개간에 따른 도지권(영구경작권)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 과정에

서 일제는 이러한 도지권을 빼앗았으며, 나머지 개간되지 않은 목장토도 강제로 국유지로 편입시켜 버렸다. 이러한 일제의 국유지 약탈정책에 맞서 개간 농민인 화전민들이 목장토 및 둔전에서 소유권을 찾기 위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결국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으며, 화전농민들 대부분은 생활기반을 도외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14년에는 총령 제136호 시장규칙에 의하여 성내·삼양·조천에 시장을 설치하였다. 그 뒤 19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애월·한림에 시장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 설치의 근본적인 의도는 일본 상품을 비싼 값으로 제주도민에게 판매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액의 시장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징세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설치가 도민의 경제적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없었다(이영훈, 1989 ; 김동전, 1996).

2) 운동의 준비

일제는 운동의 최고 책임자를 경북 영일군 출신의 승려 김연일로 파악하였다. 김연일은 1914년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 법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항상 교도들에게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정구용 판결문」에는 “김연일은 일찍부터 제국 정부의 조선 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1918년 음력 6~7월경부터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작당을 하고 폭행·위협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제국 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일 것을 꾀해 그 절에 모여드는 신도들에게 그 취지를 전달, 가담토록 독촉하던 바……”라고 기술되어 있다.

1918년 당시 법정사에는 김연일·정구용·장임호 등 7명이 경상북도 영일군과 함경북도로부터 입도하여 체재하고 있었다. 김연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동거자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관리 및 거류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1918년 6월경 김연일은 제주 출신 승려 강창규·방동화와 함께 산천단에서 형제의 의를 결성한 뒤 법정사에서 항일거사 성취를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임혜봉, 1995 ; 제주도, 1996).

이들은 거사를 앞두고 인원 동원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당시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던 선도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1918년 8월 초 방동화는 선도교 수령 박주석을 집으로 찾아가서 법정사의 비밀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청하였다. 9월 8일 법정사를 찾아가면 박주석은 김연일·강민수·정구용·방동화·장임호·김용충·김인수 등과 운동의 세부 실행계획을 모의했다. 박주석은 후에 “김연일과 김인수가 자신들은 백제 김왕(金王)의 후예로서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전부를 몰아내고 천하를 잠움에 있어 당신은 선생이 되어 모든 것을 지휘해 달라고 말해서 나는 이에 따랐다”고 일제 경찰에 공술하였다. 김연일 등 법정사 거주 불교 승려 및 신도들이 선도교 세력을 운동에 합류시키려고 노력하였음이 엿보인다.

선도교 세력을 운동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까닭은 당시 제주에서의 선도교 포교 현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선도교는 대체로 1916년 이후에는 제주도에 과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선도교는 강일순(姜一淳)(호는 증산)에 의해 형성된 증산도문의 뛰어난 조직가 차경석(車京石)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앙체계를 말한다. 동학농민운동에 깊숙이 참여했다가 강일순의 독특한 언행에 끌려 모여든 자들을 강일순이 말한 ‘후천개벽(後天開闢) 시대의 상등국(上等國)이 될 조선의 전권(全權)’을 내세워, 조직해낸 이가 바로 차경석이다. 그는 조선의 전권을 거머쥐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조선의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를 선도교의 국권회복운동이라 말한다. 선도교는 이후 교세의 확장을 가져와서 1920년 경에는 교인이 100만에 이르렀다. 보천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2년의 일이었다(김정인, 2001 ; 성주현, 2001 ; 趙景達, 2002).

제주도에서는 1916년 이후 선도교 신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사건에 보천교와 관련된 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1918년경에 이미 선도교 교도였음이 재판판결문에 밝혀져 있다. 그리고 대포리에 거주하던 강상백(姜祥伯)도 이미 1916년에 선도교에 입교하고 있었다고 후손들이 작성한 비문에는 전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의 기록이지만, 『동아일보』 1922년 12월 29일자에는 당시 제주도의 보천교도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4년 전인 1918년 당시 보천교의 전신인 선도교 교도가 제주도 전지역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연일과 박주석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인 교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항일의식을 소유한 불교도와 선도교도의 집단적인 연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운동의 발발과 전개

김연일 등은 1918년 9월 19일 법정사에서 행해지는 우란분제(盂蘭盆祭 : 음력 8월 15일 추석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영전에 바치고, 굶주린 귀신에 시주하여 조상의 명복을 비는 불교의식)라는 불교 제의에 참석한 남녀 교도 30여 명을 대상으로 항일의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연일은 사람들을 향해 “이번에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옛날의 독립국으로 만드는 데 진력하기로 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불무황제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운동 거사 보름 전에 교도들을 규합하여 독립을 위한 의지를 뚜렷이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무황제의 출현을 예고하였을 뿐, 김연일 자신이 불무황제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 경찰측 자료에는 이 날 모임에서 김연일이 행한 발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놈이 우리 조선을 병합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불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사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들을 도외로 구축하여야 한다”(경무국, 1919 ; 경상북도 경찰부, 1934)

즉,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운동의 목적과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들을 몰아낸다는 투쟁 방침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적과 투쟁 방침은 이 사건이 뚜렷하게 항일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일본 상인들이 구축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 상업자본의 제주 지역에 대한 진출로 말미암아 도민들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해져 갔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격적인 운동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10월 4일 주변 좌면(중문면)과 우면(서귀면)의 마을 이장 앞으로 보낼 격문을 정구용이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당시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야 옥황상제 성덕주인(聖德主人)이 나와 이들 조선인민을 구제토록 명을 받았다. 이제 각 면 이장은 즉시 이민 장정을 모아 술군(率軍)하여 10월 7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 10월 8일 대거 제주향(제주성내)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정구용 판결문」)

당시 격문은 각 리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배포되었다. 격문이 돌려졌던 지역은 주로 중문면과 서귀면 일대 마을이었지만, 뒤의 검거자 명단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안덕면·한림면·제주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도에 걸쳐 있었다. 격문에는 뚜렷이 일제 축출과 국권 회복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고, 거의 의무적으로 마을별로 인원을 동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인원 동원 방법은 19세기 제주도에서 전개된 민란에서 이미 구사되었던 바 있다. 그러므로 법정사 항일운동은 과거 민란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10월 5일에는 각 지역별로 남자 장정 33명을 법정사에 소집시켜서 운동의 조직을 편성하였다. 김연일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불무황제임을 선포하고, 박주석을 도대장(都大將), 방동화와 강민수를 좌우대장, 양남구를 중군대장, 김삼만을 후군대장으로, 장임호를 모사(謀師)로 삼았다. 선도교 수령 박주석을 도대장으로 앉세우고, 강민수·김삼만·장임호 등 법정사 거류자들과 방동화·양남구 등 재지 불교도들을 혼합한 방식의 지도부 편성이었다. 이러한 도대장 이하 체계적인 군부서 조직은 한말에 나타났던 의병과 비슷한 부대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연일은 박주석과 운동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우선 서귀포와 중문리를 공격한 뒤 제주성내로 나아가서 일제 관리와 일본인들을 축출하자는 대원칙을 정하였다. 인원 동원 방식은, 봉기군이 지나가는 연도의 각 마을 리장 등으로부터 민적부(民籍簿)를 제출하도록 하여 각 마을의 장정을 징발하자는 방동화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준비된 무기는 화승총 3정과 곤봉 수십 개 정도에 불과했다.

10월 7일 새벽에 법정사에 집결한 34명의 봉기군은 서귀포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김연일·김인수·김용충은 법정사에 남았음). 우선 도순리 상동에서 박주석의 지휘하에 무리를 4~5명씩으로 나누어 민가에 들어가서 봉기군에 가입할 것을 명령하여 5명 정도를 무리에 합류시켰다. 이어서 영남리로 가서 공포를

쏘며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장 강임준에게 민적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25명의 장정을 징발하였다. 서호리와 호근리에 가셔도 같은 방식으로 약간의 가담자를 확보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예정을 변경하여 서귀포 공격을 중지하고 중문리로 공격 방향을 바꿨다. 강정리에서 30여 명, 도순리에서 많은 주민들을 봉기군에 가담시켜 하원리로 향하였다. 이때 선봉에 섰던 강창규는 봉기군에 명령하여 강정리와 도순리 사이에 있는 대천(大川) 연변에서 서귀포에서 제주성내로 통하는 전선과 전주 2본을 절단함으로써, 통신을 차단해 버렸다.

하원리에 이르렀을 때 봉기군의 총 수는 3~4백 명에 달하였다. 하원리로부터 중문리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려고 중문리로 향하던 도중 마침 일본인·개신교 신도와 마주치게 되자, 봉기군은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小泉清身, 서귀포에서 병원 개업), 윤식명(개신교 목사), 원용혁(개신교 전도인)이 부상을 입었다(강문호·문태선, 1978). 이는 당시 제주민들이 일본인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서양인에 대해서도 배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운동에 동참한 선도교는 변화해 가는 세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상투와 흰옷 입기를 고집하였으므로, 선도교도들은 기독교나 서양인을 철저히 배척하였다. 때문에 위와 같은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강창규가 선도한 봉기군은 중문리에 이르러 경찰관 주재소 건물과 물품을 파괴하고, 강창규가 직접 지붕의 짚을 뽑아 불을 붙여 주재소 건물에 방화, 전소시켜 버렸다. 봉기군은 주재소장 요시하라(吉原)를 비롯한 일제 경찰 3명을 포박하는 한편, 주재소에 구금되어 있던 13명을 석방시켰다.

이에 경찰은 급히 목포에 경찰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진압에 나섰다. 서호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박주석 부대는 산과 바다로 퇴각하였고, 결국 박주석을 비롯한 38명의 봉기 주도자가 체포되었다. 김연일은 중문리 천제연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체포됨으로써 운동은 종식되었다(경무국, 1919 ; 임혜봉, 1995 ; 제주도, 1996).

4) 운동의 결과

당시 운동에 가담하였던 인원은 4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제측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총인원이 66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운동은 과거 민란과 같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던 사건으로 파악된다. 이들 인원은 우선 불교나 선도교 교단 조직을 통하여 동원되었겠고, 과거 민란과 같이 격문 배포를 통하여 각 리별로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불교도들은 물론 법정사를 중심으로 하여 결집되었겠지만, 선도교도나 일반 주민들은 각 마을별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사 중심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체 중문 지역의 운동으로 확대시켜 보아야 할 듯하다. 나아가 운동의 최종 목표 지역이 제주성내였음을 상기할 때, 제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10월 4일에 격문을 작성하여 각 마을에 배포하였고, 5일부터 6일까지 법정사에 봉기군을 집결시켜 군 조직을 편성하였다. 10월 7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하여 마을별로 인원을 동원시키며 서귀포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전선을 절단하여 연락을 차단시키고,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방화·전소시켰다. 그리고 주재소원 및 일본인을 포박·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렇듯이 운동은 나흘에 걸쳐서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이 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하여 나갔다. 이 운동 이후 일제 경찰은 주동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벌여서 관련자 66명을 3차에 걸쳐서 목포감사지국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1919년 2월 4일 열려서 형이 언도되었다. 결국 관련자 31명에게는 실형이 언도되었고, 2명은 재판 이전에 심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15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고, 18명은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되었다.

3. 운동참여자에 대한 분석

중문지역의 항일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신상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 중인 『1918년도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와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를 통하여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여 보자. 우선 위의 자료에 입각하여 신상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명	본적	주소	나이	직업	형량	비고
金蓮日	경북 영일군	중문 도순	47	승려	징역10년	법정사 주지, 불무황제
朴周錫 (朴明洙)	한림 금악	한림 금악	55	농업	징역7년	선도교 수령, 전남 진도 출신, 봉기군도대장, 옥사
金三萬	중문 도순	중문 도순	55	무직	징역4년	법정사 인부, 봉기군 후군대장
梁南求 (梁南久)	서귀 서흥	중문 도순	28	농업	징역4년	봉기군 중군대장 대전형무소 복역
張林虎	함북 출생	중문 도순	63	무직	징역4년	법정사 거주, 봉기군 모사
金奉和 (金基和)	안덕 덕수	중문 대포	39	농업	징역2년	승려, 옥사 김명돈의 동생
金明敦	안덕 덕수	안덕 덕수	46	농업	징역1년	승려
金基水 (金基洙)	중문 월평	중문 월평	31	농업	징역1년	
崔泰祐 (崔太兪)	서귀 서흥	서귀 서흥	45	일용직	징역4년	승려,崔珍洙로 개명, 전남 나주에서 출생
姜奉煥	한림 금악	한림 금악	51	농업	징역2년	선도교 신도(?)
文南奎	중문 도순	중문 도순	49	농업	징역3년	문남은의 형
李昇斌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8	농업	징역1년	
金武錫 (金戊錫)	중문 월평	중문 월평	31	농업	징역2년	선도교 신도(?)
吳秉允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2	농업	징역1년	목포형무소 복역
文南恩	중문 도순	중문 도순	44	농업	징역1년	문남규의 제
李宗昌	중문 도순	중문 도순	38	농업	징역1년	
金成洙	중문 월평	중문 월평	21	농업	징역1년	목포형무소 복역

성명	본적	주소	나이	직업	형량	비고
金商彦 (金揖彦)	중문 하원	중문 하원	48	농업	징역6년	승려
金斗三	중문 영남	중문 영남	25	농업	징역1년	옥사
李達生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2	농업	징역1년	
姜基秋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5	농업	불기소	
高用錫	중문 중문	중문 중문	52	농업	징역3년	표선 출생
趙桂成	중문 월평	중문 월평	36	농업	징역2년	선도교도(?)
吳仁錫	서귀 상예	서귀 상예	38	농업	불기소	
玄才千	중문 하원	중문 하원	46	농업	"	
崔信日	중문 월평	중문 월평	42	농업	징역1년	
李春三	중문 하원	중문 하원	63	농업	징역6월	총포화약취체령 위반
姜春根	제주 오라	제주 오라	27	농업	재판전옥사	
金胤錫	중문 대포	중문 대포	58	농업	불기소	
姜翼	제주 오등	제주 오등	42	농업	"	
文南振	중문 도순	중문 도순	52	농업	"	
姜英俊	중문 월평	중문 월평	20		"	
李戊賢	중문 월평	중문 월평	21		"	
李世仁	중문 회수	중문 회수	30	농업	불기소	
崔文洙	서귀 법환	서귀 법환	52	농업	"	
姜昌奎	불상	안덕 사계	39	무직	징역 8년	승려, 중문주재소 방화 지휘
姜壽五	"	안덕 사계	?	무직	재판전옥사	강창규의 제
鄭龜龍	경북 영일	중문 도순	29	무직	3년	법정사 거주 거사 격문 작성
房東華 (房河龍)	중문 도순	중문 도순	32	농업	6년	승려, 봉기군 좌대장
姜敏洙	불상	중문 도순	38	무직	1년6월	법정사 거주 봉기군 우대장
金用忠	경북 영일	중문 도순	29	무직	1년6월	"
李允平	중문 도순	중문 도순	32	농업	1년	
金仁秀 (敬泰,景泰)	경북 영일	중문 도순	20	무직	3년	김연일 조카
韓允玉	중문 도순	중문 도순	18	법정사 하인	불기소	법정사 거주

성명	본적	주소	나이	직업	형량	비고
梁 鳳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8	농업	벌금 30원	
金恒律	중문 영남	중문 영남	39	농업	"	
元仁水	중문 하원	중문 하원	51	농업	"	
金仁松	중문 하원	중문 하원	41	농업	"	
池丑生	중문 하원	중문 하원	42	농업	"	
康斗玉	중문 월평	중문 월평	62	농업	"	
玄戊生	중문 월평	중문 월평	32	농업	"	
池甲生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0	농업	"	
吳寅植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3	농업	"	
姜舜奉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5	농업	"	
姜太河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2	농업	"	
宋乙生	중문 월평	중문 월평	44	농업	"	
金昌鎬	중문 월평	중문 월평	40	농업	"	
李遠榮	중문 월평	중문 월평	44	농업	"	
李奉奎	중문 하원	중문 하원	41	농업	"	
朴京治	중문 영남	중문 영남	44	농업	불기소	
李自春	중문 영남	중문 영남	43	농업	"	
元性春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4	농업	"	
金丙日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3	농업	"	
金仁浩	중문 하원	중문 하원	38	농업	"	
高基棟	중문 하원	중문 하원	22	농업	"	
趙仁赫	중문 도순	중문 도순	48	잡화상	"	

우선 이들의 본적지와 거주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운동참여자의 본적지별 분포 >

본적지	중문도순	중문하원	중문월평	중문영남	중문중문	중문상예	중문대포	중문회수	서귀서흥	서귀법환	안덕덕수	안덕사계	한림금악	제주오등	제주오라	경북영일	합북	합계
인원	10	18	10	5	1	1	1	2	2	1	3	2	2	1	1	5	1	66

< 운동참여자의 거주지별 분포 >

거주지	중문도순	중문하원	중문월평	중문영남	중문중문	중문상예	중문대표	중문회수	서귀서흥	서귀법환	안덕덕수	안덕사계	한림금악	제주오등	제주오라	합계
인원	17	19	11	4	1	1	2	2	1	1	1	2	2	1	1	66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운동참여자의 본적지와 거주지는 대부분 중문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경북 영일 출신의 김연일과 연관 있는 불교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서귀·안덕·한림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주면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별 동원은 아마도 전도적으로 퍼져 있던 선도교 교단의 조직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선도교 두령인 박명수가 한림 금악 출신이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여 준다 하겠다. 그리고 법정사는 중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일대의 불교도들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의 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불교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 선도교 교도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표에 보이는 월평리의 김무석·조계성·강봉환 등이 선도교도였다고 한다(임혜봉, 1995). 그리고 앞서서도 보았듯이, 대포리의 강상백 같은 인물도 선도교도로서 이 운동의 배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는 불교·선도교와 연관 없는 일반 지역민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대부분은 표에 나타나듯이, 일반 농민계층이었다. 이들은 각 리별로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자들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운동은 법정사 승려 중심의 사건이나 선도교도 중심의 사건으로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중문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던 항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동참여자들의 형량을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운동참여자의 형량 >

형 별	징 역											옥 사	벌 금	불 기 소	합 계
	10 년	8년	7년	6년	4년	3년	2년	1년-6월	1년	6월	소 계				
인원	1	1	1	2	4	4	4	2	11	1	31	2	15 (30원)	18	66

이 표에서 보듯이, 운동의 최고책임자인 김연일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고, 강창규와 박주석·김상언·방동화 등이 중형을 인도받았다. 이들을 포함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2명이 옥사하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형이 인도되어 당일로 확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일제는 이 사건을 거의 보복의 차원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이 1919년 3·1운동 직전에 일어났던 항일투쟁으로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사건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

4. 맺음말

1918년 중문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법정사 항일운동’)은 지금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사이비종교 교단이 일으킨 난동으로 매도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구용 판결문」에 보이는 김연일 등의 각종 발언을 통해 ‘일제 축출, 국권 회복’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각종 일제 경찰당국의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무국, 1919; 경상북도 경찰부, 1934). 제주도청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도 “그 선언하는 바가 ‘국권 회복’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전라남도 제주도청, 1923). 또한 동아일보(1922. 12. 29)에는 “독립운동(3·1운동)이 발발하던 전 해에 제주도 내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까지 조직하여……”라고 평하여 한국인

들 사이에도 독립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법정사 항일운동'의 한 축을 이뤘던 선도교는 국권 회복을 내세운 민족종교로 출발하여, 1920년대 초반 보천교로 개명,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김정인, 2001). 1923년 제주도에 진정원(眞正院)이 설립되었는데, 원장 및 간부를 지낸 장용건과 문창래는 각각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운동에 가담했던 민족적 성향이 짙은 인물들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보천교 배척과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의 보천교 박멸운동으로 보천교를 미신으로 취급하는 경향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서도 '보천교 난리'로 깎아내려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운동을 특정 종교교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봉기군의 편성에서부터 인원 동원에 이르기까지 법정사 승려·불교신도와 선도교 교단과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졌고, 운동이 본격화되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도 대거 가담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종교·사상적인 면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란분제와 같은 불교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거나, 출정에 앞서 기도를 올린단든지 하여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 승려인 김연일이 "(독립하여) 도움을 충청남도 계룡산에 세울 계획이며"라고 말하고 있듯이, 정감록과 후천개벽 사상도 이 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원래의 한국시대를 회복하겠다"거나, "제주도로부터 일본인을 추방하여 일단 제주도의 왕이 되고"라고 하여, 복벽주의(復辟主義)와 제주도민의 분리주의에도 이 운동은 닿아 있다.

셋째로, 이 운동을 법정사에만 한정된 운동으로 보는 것은 편협된 관점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운동의 준비에서부터 거사가 이루어진 상징적 장소란 점 때문에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부르고 있지만, 명칭에 국한되어 법정사나 불교교단만을 기념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동의 목표는 분명히 서귀포와 중문리를 거쳐서 제주성내로 나아가서 일제를 축출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원 동원을 모색했고, 실제 중문 주재소를 공격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가담했던 것이다. 단순히 법정사 내의 일부 승려나 선도교 지도자들만의 운동이 아니었고, 중문지역, 나아가 전 제주지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던 운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의식을 가졌던 일부 불교승려 및 교도들과 민족종교인 선도교 교도와 중문 지역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결합된 항일운동으로 정확히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섬이라는 지역적 고립 상황, 운동 주도인물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기 1년 전에 일어난,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항일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높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기> 필자는 1996년 『제주도』 99집에 게재된 글을 통해 이 사건을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불교나 선도교에 국한된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닌 중문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지역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단, 법정사를 거점으로 하여 항일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 사이에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통칭된다는 점, 제주학회 학술대회 주제 또한 같은 명칭으로 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채택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A. 자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1918.
 『동아일보』 1922년 12월 29일.
 「정구용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23. 6. 29.
 전라남도 제주도청, 『未開의 寶庫 濟州島』, 1923.
 경무국, 「고경 제36610호 태을교도(太乙教徒) 검거에 관한 건」, 1919. 12. 26 ;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제1-1권, 민족주의운동편, 1967에 영인 수록.

경상북도 경찰부, 『일제경찰극비본 폭도사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1934.

강문호·문태선 공저, 「윤식명 목사 일행의 수난」, 『제주선교 70년사』, 1978.

B. 논문·단행본

임혜봉, 「제주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중문청년회의소 창립 20주년,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요지문』, 1995.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1995.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1996.

제주도, 「1918년 법정사의 항일운동」,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趙景達, 「救世主의 誕生-普天教에 集う民衆」, 『朝鮮民衆運動의 展開-士의 論理と救濟思想』, 岩波書店, 2002.

조성운, 「일제 초기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쟁」, 『제민일보』(「이야기 제주역사」 87), 2001.

이영훈,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연구』 16, 1996.

이 논문은 2002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